

# 서울특별시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영실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0
----------	-----

발의년월일 : 2018년 10월 17일

발 의 자 : 이영실 의원(1명)

찬 성 자 : 김화숙, 이승미, 이병도,  
노식래, 김호평, 홍성룡,  
황인구, 박순규, 박상구,  
이정인, 오현정, 송명화,  
문병훈, 박기재, 김경영,  
이은주, 김경우, 김혜련,  
봉양순, 서윤기, 김동식,  
김소양 의원(22명)

## 1. 제안이유

- 「한국수화언어법」의 제정·시행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 한국수화언어의 사용환경을 개선함으로써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인 서울특별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한국수화언어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조례의 제명을 바꿈으로써 한국수어발전 사용 환경에 대한 적극적 개선 의지를 표명하고자 함.
- 「한국수화언어법」 제7조를 근거로 서울특별시장의 매년 “서울특별시 한국수어발전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는데, 그 구체적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새로 규정함으로써 법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명확성을 담보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음.

## 2. 주요내용

- 가. 조례안 제명을 “서울특별시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한국수화언어 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 나. 서울특별시 한국수어발전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추가로 신설함.  
(안 제5조제2항과 각호 신설)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한국수화언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참조

## 서울특별시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한국수화언어 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로 변경한다.

제5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시의 한국수어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3. 농인인 시민의 한국수어 교육 등을 통한 능력 증진에 관한 사항
4. 한국수어의 사용촉진 및 보급에 관한 사항
5. 한국수어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한국수어 관련 민간부문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7. 농인문화 육성에 필요한 사항
8. 그 밖에 한국수어 발전과 보급에 관한 사항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생략)</p> <p>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p>	<p>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현행과 같음)</p> <p>② &lt;신설&gt; 시행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시의 한국수어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u></li> <li>2. <u>한국수어에 대한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u></li> <li>3. <u>농인인 시민의 한국수어 교육 등을 통한 능력 증진에 관한 사항</u></li> <li>4. <u>한국수어의 사용촉진 및 보급에 관한 사항</u></li> <li>5. <u>한국수어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u></li> <li>6. <u>한국수어 관련 민간 부문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u></li> <li>7. <u>농인문화 육성에 필요한 사항</u></li> <li>8. <u>그 밖에 한국수어 발전과 보급에 관한 사항</u></li> </ol> <p>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p>